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백승아 · 문정복 · 박홍배
김 윤 · 정진욱 · 권향엽
진성준 · 박지원 · 임미애
김준혁 · 이용선 · 허 영
이광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.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,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,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.

현행법은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·교육·취업·자립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은 「청소년 기본법」상 청소년으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만 해당하여 7~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재입학,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

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9조).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”를 “7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본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”을 “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”이란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9조(교육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학교 밖 청소년이 <u>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 <신설></p> <p>3.·4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7세 이상 24세 이하인</u> 사람을 말한다. <u>이 경우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7세에 도달한 사람으로 본다.</u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교육지원) ① ----- ----- -----<u>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</u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2의2. 「<u>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의 <u>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